

# 5

## 법령·제도개선 건의사항 보고

영유아담당관 : 변경옥 ☎2133-5088 영유아지원팀장 : 오미영 ☎5105 담당 : 한순자/신민경 ☎5107

### □ 총 3건 건의(→보건복지부)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
<p>1. 어린이집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조정 (영유아담당관, '23.8.1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 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교사 대 아동 비율(교사 1명 당) : 0세 3명, 3세 15명</li> <li>○ 인건비 지원 기준 : 0세반 2명 이상, 3세반 8명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□ 문 제 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은 어린이집 안전사고 및 아동학대, 교사 업무부담 증가 요인</li> <li>○ 최소 인건비 지원 기준으로 인하여 교사 대 아동비율 개선사업 추진 어려움</li> </ul> </li> <li>□ 건의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현행 국비 인건비 지원기준 완화    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0세반 : 2명→1명 이상</li> <li>- 3세반 : 8명→5명 이상</li> </ul> </li> <li>⇒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 관련 별표2 '보육교직원 배치기준' 개정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□ 관련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0조</li> </ul> </li> </ul>
<p>2. 외국인 아동 정부 보육료 지원 (영유아담당관, '23.8.1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 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육료 지원대상 : 대한민국 국민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만0~5세 아동</li> <li>⇒ 외국인 아동 제외</li> </ul> </li> <li>□ 문 제 점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집 재원 외국인 아동 증가를 고려, 안정적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필요</li> </ul> </li> <li>□ 건의내용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어린이집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법적근거 마련(영유아보육법)</li> </ul> </li> <li>□ 관련규정              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영유아보육법 제34조(무상보육)</li> </ul> </li> </ul>

건의 제목 (건의부서, 건의일자)	건의내용
<p>3. 육아휴직 대체교사 호봉에 따른 인건비 지원 (영유아담당관, '23.8.1.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□ 현 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육아휴직 시 대체교사 인건비 지원(단, 기존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범위 내)</li> </ul> </li>   <li>□ 문 제 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우수한 인력채용 저해 및 보육공백 발생 우려</li> <li>○ 특히 어린이집 학기 중 구인난이 심화되므로 육아휴직 대체교사 인건비 기준을 완화하여 어린이집 부담경감 및 육아휴직을 장려할 필요성이 있음</li> </ul> </li>   <li>□ 건의내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대체교직원 인건비 지원 한도 규정 삭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(현행규정) 대체교직원 인건비는 기존 인건비 지원 대상자에게 지원되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</li> </ul> </li> </ul> </li>   <li>□ 관련규정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안내</li> </ul> </li> </ul>